

# 제 15주차 지속가능한 골프장 공급과 골프산업의 발전 전략

## 1. 지속가능한 골프장 공급

### 1)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급기준

#### 가. 경제성

- 현재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는가?
- 국가경제: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수입(세제 현 상태 유지?)
- 지역경제: 지역 세금(조세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 직원거주지, 물품구매 등
- 골프산업: 내장객, 이용료, 매출액
- 해외수지: 골프관광객 수, 지출액(균형 또는 감소)

#### 나. 사회성

- 현재의 사회적 효과가 지속되는가?
- 고용: 정규직원 수, 일용직원 수, 지역 거주자 수, 캐디 수
- 민원(갈등): 갈등 건, 주민 의식
- 골프선호도: 연령별 골프인구, 골프 회수, 남여 골프인구
- 골프에 대한 인식: 호감, 중간, 비호감

#### 다. 환경성

- 현재의 자연자원이 지속되는가?
  - 산림: 훼손면적
  - 농경지: 훼손면적
  - 하천(저수지): 훼손(변형) 면적
- 현재의 생태계가 지속되는가?
  - 육상생태계: 훼손산림면적 vs 복원면적(대체복원), 농경지 vs 대체농경지, 생태계 단절 여부, 보전지역 훼손면적
  - 육수생태계: 훼손하천(저수지)면적, 복개 또는 변형 등 생태계 단절 여부
  - 생물다양성: 식물종, 동물종, 서식지, 유전자
  - 중요종: 멸종위기야생동물 종, 천연기념물, 희귀종, 고유종, 특산종, 멸종위기종, 포획이 금지된 동물
  - 경관: 조망되는 면적, 스카이라인 훼손 정도,

## 2) 지속가능한 공급정책

수요자에 비해 공급과잉이 되는 시점을 예측하여 과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산 등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파급효과 최소화) 예방

경제적으로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예측되는 시점을 정점으로 공급정책에 반영

그러나 해외 골프관광객은 골프장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사회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의 감소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지점을 정점으로 공급정책에 반영

경제적 어려움으로 골프장 공사가 중단되어 지형훼손, 수질악화, 생태계 훼손, 경관훼손 등의 징조가 발생될 가능성을 보일 때 공급정책에 반영

## 3) 공급

국내의 골프장 적정 수는 전문가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골프장 공급 수준은 대략 400~500개(18홀 기준)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시기적으로 이 목표를 초과하는 년도로 2010년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것을 초과하여 골프장이 공급될 경우 시장경제에 따라 공급과잉에 따른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용객들에게는 이용료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으나 골프장의 서비스와 편리함 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2. 골프산업의 전망<sup>1)</sup>

### 1) 골프장수 전망

#### 가. 지역별 골프장수 전망

- 수도권 : 대중골프장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 리조트형 골프장 건설이 증가될 것임. 추진 중인 골프장들의 대부분 완공될 전망
- 충청·강원권 : 수도권에 근접하여 있으며 땅 값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됨. 자체 수요와 수도권의 잉여 수요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들은 대부분 완공될 것임
- 영·호남권 : 개발자와 지자체의 협조로 2007년 현재 골프장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2~3년후 공급과잉상태에 접어들 전망. 특히 호남권에는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어(해남·영암 126홀, 무안 108홀, 무주 36홀 등 270홀 추진) 공급과 수요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주권 : 2006년부터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골프장 공급은 제한적일 것임

### 2)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수지 전망

#### 가. 골프장 경영수지 악화

- 공시지가·과표 현실화 등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 골프장 공급확대에 따른 골프장 간 경쟁 격화와 이에 따른 이용료 인하, 인건비 증가 등으로 골프장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전망
- 본 분석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 여부에 따라 2개의 시나리오로 추정
  - ① 시나리오 ① : **비관적** 전망(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유지, 과표 현실화 ⇒ 골프장 수익성 악화, 도산업체 속출)
  - 전제조건
    - 분석대상 골프장수 : 개장한 지 3년이 지난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분석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 입장료에 붙는 세금·체육진흥기금이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골프장간 경쟁 격화로 점차 인하
    - 지방세 : 매년 10%씩 인상된다고 가정(세금과공과의 2001~2005년 연평균

1) 서천범, 2006, “한국골프산업발전방안”내용 인용

상승률 6.26%)

- 골프장당 이용객수 : 2010년에는 2007년 보다 18% 감소한다고 가정
  - 인건비 : 2010년에는 인력구조조정으로 2007년보다 10% 감소한다고 가정
  - 객단가 : 2010년에는 2007년보다 5% 하락한다고 가정
  -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 : 2005년 22.0%, 2007년 10.0%, 2010년 △12.9%
  - 중과세율이 인하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들의 도산이 속출하면서 日本처럼 외국계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우려됨.
  - ② 시나리오 : 낙관적 전망(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 ⇒ 입장료 인하, 이용객 증가폭 확대)
  - 전제조건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 입장료에 붙는 세금·체육진흥기금 면제(현재보다 3만원정도 인하)
    - 지방세 : 2007년까지는 매년 10%씩 인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세율인하 등으로 2007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 골프장당 이용객수 : 입장료 인하에도 불구, 골프장 공급 확대 등으로 2010년에는 2007년보다 13% 감소한다고 가정
    - 인건비 : 2010년에는 인력구조조정으로 2007년보다 10% 감소한다고 가정
    - 객단가 : 골프장간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중과세율 인하로 2010년에는 2007년보다 5% 하락한다고 가정
  -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 : 2005년 22.0%, 2007년 10.0%, 2010년 △1.2%
  - 중과세율이 인하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이 어렵고 수익성도 급락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건설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됨.
- 라. 일본 골프장의 사례
- 골프장당 매출액 : 1992년 11억 2,900만엔 ⇒ 2002년 5억 3,600만엔(52.5% ↓)
  - 골프장당 손익 : 1992년 1억 600만엔 흑자에서 2002년에는 500만엔 적자 기록
  - 1인당 객단가 : 1992년 22,375엔, 2002년 12,642엔(43.5% ↓)

### 3) 골프장 업계의 환경 전망

#### 가. 골프장 차별화 전망

- 골프장 등급이 회원권 가격의 높낮이로 결정되는 현재와는 달리, 부킹 원활 여부, 서비스·코스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최고급·고급·보통 골프장으로 자연스럽게 차별화될 전망
- 부킹이 원활하고 서비스·코스수준이 우수한 고급 골프장(Private Golf Course)은 회원 위주로 운영될 것임. 골프장이 적자가 날 경우에는 회원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할 것임.
- 회원이 많아 부킹이 어렵고 서비스·코스수준이 떨어지는 일반 골프장은 이용료 인하로 객단가가 하락하면서 운영수지도 악화될 전망임.

#### 나. 일반·고급의 양극화가 진행될 전망

- 앞으로 국내 골프장 업계는 골프장수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이용객 확보 경쟁 등으로 ‘낮은 요금의 일반 코스’와 ‘고급 치향의 하이엔드 코스’라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어느 쪽의 범주에 들어갈지는 그 골프장이 갖고 있는 입지조건, 회원수, 서비스 수준 등 기본적 요소에 따라 저절로 위치가 결정될 것임.

#### 다. 다수의 일반 골프장과 소수의 고급 골프장으로 재편될 듯

- 국내 골프장 업계는 향후 2~3년 후 골프장수의 확대에 따른 이용료(객단가) 하락, 이용객수 감소 등으로 많은 고급 골프장들이 일반 골프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골프장 업계는 지금까지는 ‘다수의 고급 골프장과 소수의 일반 골프장’이라는 불안정한 역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이용객수 감소 등으로 현재는 ‘소수의 고급 골프장과 다수의 일반 골프장’의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

#### 라.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필요

- 골프장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골프장의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부의 경영전문가들이 골프장 CEO를 맡으면서 경영혁신을 주도할 것임.
- 골프장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용객수를 늘리는 방법과 인건비나 경비를 삭감하는 방법이 있음.
- 이용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입장료 등 이용료 인하를 통한 집객이 가장 효율적이나 인근 경쟁 골프장의 가격 인하로 효과가 없이 객단가만 하락 시킴. 따라서 인력 구조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3. 국내 골프산업 발전 방안<sup>2)</sup>

## 1) 세금 관련

### 가. 골프장 중과세율 인하

#### 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

- 우선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체육진흥기금 등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골프장 공급확대에 따른 골프장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지방세의 경우, 당장 세율을 인하하면 지자체들의 세수 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세율인하 프로그램을 제시해 지자체들의 세수 결함에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음.

#### 나) 기대효과

-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체육진흥기금 등을 폐지하면, 입장료가 인하되면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대중화가 촉진됨.
- 중과세율이 인하되면,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체들의 경영난이 완화되면서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음.

### 나. 특별소비세

#### 가)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1회 라운드시 부과세금

-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1회 라운드시 부과세금 : 총 21,120원(부가세 포함)
- 특별소비세 : 12,000원
- 지방교육세 : 3,600원(특소세액의 30%)
- 농어촌특별세 : 3,600원(특소세액의 30%)
- 부가가치세 : 1,920원(특소세·교육세·농특세액의 10%)

#### 나) 문제점

- 특소세는 사치성 또는 소비성 업종 및 물품에 벌과금적인 과세를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가 1,263만명(2005년)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

2) 서천범, 2006, “한국골프산업발전방안”내용 인용

설업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에만 특소세를 부과

-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 체육관련 법률에서도 지원·장려·육성해야 할 스포츠시설로 규정

다) 개선방안

- 대안 ① : 골프산업 및 스포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특소세 폐지
- 대안 ② : 특소세(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감면
  - 특소세할 목적세 폐지 : 교육세(특소세의 30%) 폐지  $\Rightarrow$  1인당 3,600원
  - 농특세(특소세의 30%) 폐지  $\Rightarrow$  1인당 3,600원
  - 지방세로 전환된 특소세(1인당 12,000원) 감면 : 지방조례로 50% 감면 가능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1인당 1,500~3,000원 납부

나) 문제점

- 체육시설 중 유일하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만 기금 부과
-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연간 350억 원)을 매년 9홀 퍼블릭 골프장 2개소씩 건설할 계획  $\Rightarrow$  골프장 공급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골프장들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

다) 개선방안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만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징수 폐지
- 문예진흥기금은 징수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 2005년 말 폐지되었음.

라. 지방세

가) 종합부동산세, 2005년 1월 1일 도입

- 과표 적용비율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50%로 상향 조정
-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 세율 1% 인하

#### 나) 지방세

##### – 재산세 토지분

- 회원제 골프장 : 분리과세, 과세표준액의 4.0%
- 퍼블릭 골프장 : 별도과세, 과세표준액의 0.2~1.6%

##### – 재산세 건물분

- 회원제 골프장 : 분리과세, 과세표준액의 4.0%
- 퍼블릭 골프장 : 종합합산과세, 과세표준액의 0.2~1.6%

#### 다) 문제

- 회원제 골프장들은 공시지가의 급속한 상향조정과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방침에 따라 세금부담이 급증해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
- 특히 지가적용비율이 현행 50%에서 점차 1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현재의 중과세율(4%)이 계속 적용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 급증

#### 라) 개선방안

##### – 재산세 토지분

- 공시지가의 급속한 상향조정 완화 : 정부의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방침에 따라 18홀 기준 1개 골프장의 종부세 납부액이 평균 10억원에 달할 전망.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토지분)를 현재의 분리과세 4%에서 퍼블릭 골프장과 같이 별도합산과세 1.6%로 인하 필요

##### – 재산세 건물분

- 세율 인하 : 현행 4%에서 0.2%로 대폭 완화  
⇒ 회원제 골프장 시설도 대중체육시설(일반과세 0.2%)로 인정
- 취득세
  - 회원제 골프장의 신규등록 시에는 취득세 10%를 퍼블릭 골프장(2%) 수준으로 완화
  -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자산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10%도 2%로 완화

<표>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의 세금비교

세금항목	회원제	대중
신규 등록시 취득세	10%	2%
특별소비세: 12,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특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 3,600원(특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920원(특소세·교	21,120원	없음

육세·농특세액의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500~3,000원	없음
재산세 토지분	분리과세, 과세표준액의 4%	별도과세, 과세표준액의 0.2~1.6%
재산세 건물분	분리과세, 과세표준액의 4%	종합합산과제, 과세표준액의 0.2~1.6%
종합부동산세(국세)	원형보전지역에 4.8% 적용? 코스에는 4% 적용?	원형보전지역에 0.2% 적용?

#### 마. 원형보존지 제한 폐지

##### 가) 현황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2005-5호)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제한
- 골프장은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하여 20% 이상의 원형보존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준면적 초과 시에는 25% 이상을 확보할 것을 규정

##### 나) 문제점

- 골프장 사업에 불필요한 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투자비(부지매입비) 증가
- 골프장은 사업 특성상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골프장 부지의 지방세(토지분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장용지보다 13배나 많음.
- 또한 사용하지도 않는 원형보존지를 강제로 보유하게 하고 세율은 골프장 평균 3%에 해당(공장용지 등보다 10배 증과)하게 되어 골프장의 과중한 세금부담

##### 다) 개선방안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을 40% 이상 보존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보존지 확보율을 폐지한다고 해도 환경손실은 없음. 日本의 경우, 원형보존지 확보율이 없고 수림대 확보율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도치기현 30%, 치바현 40%, 이바라기현 없음)
- 원형보존지 확보 제한규정 폐지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0.2%로 대폭 인하

#### 바.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 설치

- 가) 세율인하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치 필요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시, 인하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는 일정기간(약 3년 정도) 동안 입장료에 대한 인상 상한선을 설정해 업체들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해야 함.
  - 또한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도 심의·통제할 필요가 있음.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는 달리 건설·운영시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를 심의하는 것이 합리적임.
- 나) 제주도의 사례
- 제주도 골프장의 경우,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하되면서 입장료가 평균 3만 5천 원 정도 인하되었음.
  - 제주도청은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세율인하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청이 행정지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입장료를 임의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청과 업체간에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있음.

## 2)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 가. 경사도 규제 강화
- 정부가 인허가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하면서 곁으로 보기에는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5부 능선 이하 개발, 경사도 규제를 강화해 골프장 가용 면적이 크게 줄면서 산림지역에서의 골프장 개발이 더욱 어려워졌음. 경사도 25도 이상이 사업부지내 30% 이내 ⇒ 경사도 20도 이상이 사업부지내 50% 이내. 예컨대, 규제 이전에는 50만평에 27홀 골프장 건설이 가능했지만 2006년부터는 18홀밖에 건설하지 못하고 있음.
- 나. 개선방안
- 정부의 환경중시 정책과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골프장의 경사도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9홀 퍼블릭 골프장에 한해 경사도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음.

## 3) 과세기준의 변경

가. 회원제·퍼블릭으로 구분된 과세기준의 문제점

- 현행 법에서는 골프장의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퍼블릭'으로 차등 과세하고 있음.
- 퍼블릭 골프장을 추진하는 일부 사업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회원제와 퍼블릭의 장점을 취하면서 개발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골프장의 과세기준을 '회원제·비회원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즉 9홀 골프장이라도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제로 중과세하고, 36홀이더라도 회원을 모집하지 않으면 비회원제로 일반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골프장 공급과잉에 대한 대책

가.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도산 우려

- 골프장이 많이 공급되어 골프대중화가 빨리 도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회원제 사업주들은 100억원 이하의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 즉 공사비와 부족한 부지매입비 등을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데, 회원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산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골프장의 공급과잉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골프회원권 분양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모집시기등)에서는 골프장시설설치공사의 공정률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공정률에 따라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공사중단 골프장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골프회원권 분양가능시점을 현재 공정률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용시기 : 2009년 1월부터 회원권 분양업체부터 적용

5) 골프장 업계 노력

가. 골프장 업계의 자구노력

- 골프장의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처

- 골프장 업계는 입장료 인상의 한계점 도달, 세금·인건비 급증, 홀당 이용 객수 감소 등으로 향후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그동안 느슨하게 경영해온 골프장 업계가 내부적으로는 인력감축, 아웃소싱 확대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골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의 경영합리화, 구조조정을 위해 외부의 경영전문가들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골프장의 운영시스템 변경 필요
  - 입장료의 차등요금 적용 : 골프장들은 입장료의 계절별·요일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해 비수기의 골프이용객을 확대하는 동시에, 골퍼들의 비용부담을 낮춤.
  - '캐디 선택제'도입 : 라운드할 때 꼭 동반하는 캐디도 필요한 골퍼들만 선택할 수 있는 '캐디 선택제'로 바꿔어야 할 것임. 즉 골퍼들이 캐디 없이 플레이하는 '셀프플레이(self play)'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골퍼들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카드대여료 인하 : 회원제 골프장의 팀당 카트대여료는 지난 10월 평균 6만 7천원인데, 2004년보다는 14.1% 상승. 비회원의 주중·주말 입장료 인상률이 같은 기간에 각각 5.9%, 5.2%씩 오른데 비해 너무 많이 올랐음. 값싸고 성능이 우수한 국산카트가 개발되는 등 카트구입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카트대여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력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 필요
  - 골프장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① 이용객수를 늘리는 방법과, ② 인건비나 경비를 삭감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중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됨.
  -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인력구조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인력조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인력조정 대책으로는 ① 자연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보충하지 않고, ② 정규직원을 줄이는 대신에 계약직·파트타이머를 확대하며, ③ 인건비가 높은 남성종업원의 비율을 낮게 유지하며, ④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직원 한사람이 어떤 역할도 소화해내는 것(소수인력의 다기능화·정예화) 등임.
- 신규 골프인구 창출 방안 모색
  - 골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료 인하와 동시에, 비수기나 자투리 시간을 주니어·시니어·여성 등 신규 골퍼들에게 할애하는 배려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골프인구 감소와 기존 골퍼들의 활동률 저하 등이 골프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니어·시니어·여성 등 신규 골퍼들을 증가시키고 기존 골퍼들의 플레이 횟수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나. 골프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골프장에 대한 홍보 강화
  - 골프장이 환경오염의 주범 등으로 인식되어 있는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기 위한 골프장 업계의 노력이 절실함.
  -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생태계 파괴, 산림, 다량의 농약·비료 살포 훼손, 지하수 고갈 등에 대해 골프장 업계가 부문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임.